

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규정

제정 2024. 7. 31. 제정

포항공과대학교는 통합방위법 법령에 의거 직장의 방위 대책과 직장예비군의 운영, 육성, 지원을 위하여 직장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 이 협의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(이하 “방위협의회”라 한다.)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의 직장의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직장 예비군을 운영·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방위협의회의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구 성

- 제 3조 (구성)** ① 방위협의회는 의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 1인을 둔다
② 의장은 총장이 되고, 부의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, 위원은 각 처장과 예비군대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필요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, 회의록 작성·유지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예비군대대 참모가 된다.

제 3 장 운 영

- 제 4조 (회의)** ① 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심의 안건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.
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제 5조 (회의소집)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방위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의장이 참석 제한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.
-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의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제 5조의1 (원격통신수단을 통한 화상회의)

- ① 회의는 의장의 판단에 따라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.
- ②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화상회의를 개최 할 경우 의장은 화상을 통해서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참석방법 및 결의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회의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화상을 통해 출석하고 의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한다.

제 6조 (의견의 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7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4 장 심의 사항

제 8조 (심의사항) 방위협의회는 본 대학의 직장방위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1. 직장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직장 예비군의 운영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직장 민방위대의 운영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5..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그 밖의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31일자로 시행한다.